

항 고 장

1. 항 고 인(고발인)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 피의자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두환심판국민행동

3. 항고취지

고발인은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659호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측의 처벌의사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1. 10. 자로 불기소처분(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측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처벌의사를 서면으로는 제출하지 않아 처벌의사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각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합니다.

1) 자술서 작성 등을 문제삼아 모욕죄 고소와 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법합니다.

고소는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술서 작성은 고소의 적법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요하지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피해자측 대리인이 전화로 처벌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입니다. 고발인의 고발과 함께 피해자의 고소까지 추가한 본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하나 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합니다.

2) 수사기관은 조서작성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서작성의무를 유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고소와 고발을 하자있게 만들어 그 책임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돌리는 각하처분은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고발의 방식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최소한 구술로 처벌의사를 밝히면 그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본후 조서작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동법 제2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범죄 의심사항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면 수사를 본업으로 하는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서작성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술서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조서작성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와 사실관계 및 처벌의사 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정상 수사관서에서 조서작성 협조가 곤란할 때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등 방법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피해자측에 진술서 등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자술서 작성의 부담이나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피해자측에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적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선 범죄혐의자 수사, 후 피해자 조서작성의 절차를 밟아 사건을 신속히 지혜롭게 마무리 하도록 사법경찰관을 지휘했어야 합니다.

3)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었는데도 자술서 등 조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소가 아니라는 해석은 현행법을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 고소를 대리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 법익보호를 받을 수 없고, 둘째, 범죄혐의가 밝혀지기 전 단계에서 내사를 착수하기도 하며, 셋째 본 사안처럼 명백한 범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했어야 하며, 넷째, 전직 대통령이 법정투쟁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접 사저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했고, 다섯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조형물과 특정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명백한 범죄를 오랜 세월 방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직무유기, 범죄방조, 특정세력 봐주기에 해당합니다.

4) 처벌의사를 밝힌 명예훼손죄의 고소·고발을 각하처분한 것은 위법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고소를 요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대리인이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것은 적법한 고소입니다. 적법한 고소가 없었더라도 고발인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를 같은 유형으로 혼동하고 각하의견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있는 피해자측 대리인은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별다른 양식없이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고, 서면으로 고소장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5) 수사기관은 처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여론상 공지에 몰리고 있고, 고령의 노인인데다 전직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처벌의사를 전화상으로나마 밝혔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정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의법처리가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처벌의사의 문서화라는 요식행위를 핑계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적극적으로 조서작성에 협조하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기가 부담스러운 특별한 사정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6) 불법조형물은 신속히 압수되어야 합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16조).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압수하여 종국적으로 몰수되어 재범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범죄현장에서는 영장없이도 불법조형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로법상 시청에 허가를 얻지 않고 전시한 불법조형물이기도 하므로 강제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전시되고 있는 불법조형물을 즉시 압수하지 않고 강제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몰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지자체 공무원, 5.18단체가 범죄장물이자 불법조형물을 1년 내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과 수사기관이 범죄장물이자 불법조형물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광주에까지 불법전시와 모욕과 명예훼손이 끊임없이 자행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광주지방검찰청의 각하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검찰이 처리할 사건이 많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법치수호를 위해 공정하고도 실질적인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광주고

등검찰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법집행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범행에 책임있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검찰답게 대한민국에 아직은 실질적인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6.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관련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7. 증거자료

- ◆ 광주시에 전시된 전두환 불법조형물 사진 - 별첨
- ◆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두환 동상 폭행 및 모욕 동영상

5.18단체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다!

2020. 4. 27. ▶ <https://www.youtube.com/watch?v=6surpMtwkQw>

2020년 12월 3일

광주고등검찰청 귀중